올바른 예·결산 심의를 위한
지방의원 연찬회

018-360-8005

ajoumd@hanmail.

일시 : 2002년 11월 4일(월) ~ 5일(화)

장소 : 파주 홍원연수원

주최 : 함께하는 시민행동, 시민자치정책센터

후원 : 시민운동지원기금

올바른 예·결산 심의를 위한 지방의원 연찬회

1. 취지

제4기 지방의회 시대를 맞이하여 예산분석 실습을 겸한 연찬회를 통하여 지방의원들의 예·결산 심의 능력 및 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2. 일시 및 장소

2002년 11월 4일(월) - 5일(화) (1박2일)
홍원연수원 (파주)

3. 행사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4:00-15:00	등록 및 상견례	
15:00-15:10	인사말	이기우 교수
15:10-18:00	[1주제] 지방자치체 예산의 특성과 실제	김인범 2대·3대 과천시의원
18:00-19:30	석식	
19:30-21:00	[2주제] 예결산의 동향과 현안	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1:00-21:30	휴식	
21:30-23:00	[3주제] 예산감시운동의 과제와 방향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23:00-24:00	친교의 시간	
	취침	
09:00-10:30	[종합토론] 올바른 예산심의와 결산을 위한 공동의 과제	참가자 다함께

2003 예산심의 전략

하승수 변호사

이 글은 200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각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항목 및 사업아이템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아이디어들을 정리한 수준이고 토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작성한 것이므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 바랍니다.

1. 삭감 대상 예산항목 정리

가. 경상예산 중 삭감항목

판공비, 사회단체 보조금, 주민계도지 예산(인터넷 홍보비 포함)처럼 그동안 대표적인 예산낭비 항목으로 꼽혀 온 예산항목들에 대한 삭감을 추진한다.

나. 사업예산중 관행적인 예산낭비

그동안 남발되어 왔다고 지적되어 온 외부 용역(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지방자치단체 발전계획 수립 용역, 업무능률 향상이나 조직혁신 관련 용역) 예산이 계상된 경우에, 용역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삭감한다. 예를 들어 지역내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계상하는 경우가 있고, 효과도 없고 공무원 조직내에서 반발도 있는 컨설팅 용역을 계상하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발전계획 수립용역' 예산도 재검토해야 한다.

다.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없는 사업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6.1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많은 공약을 했고, 그 중에 일부를 무리하게 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 점검하고 그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때에 이익단체들과 약속하거나 각종 로비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추진 절차를 밟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비를 계상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2. 삭감을 위한 논리와 접근 방법론

가. 예산삭감을 위한 논리적 근거

예산 삭감을 위한 논리적 근거는 크게 (1)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어서야 되겠는가라는 상식적 근거와 (2) 예산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는 법적·행정적 근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상식적 근거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행정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예산감시운동의 방향과 200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 국장)

1. 예산감시운동의 방향

그간 납세자운동은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 예산, 예산편성의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참여' 예산, 잘 못 쓰여진 예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법(조례)을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하는 '소극적 공개'에서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 공개'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경우에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납세자 소송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고 적지 않은 성과를 얻어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주민참여운동으로 '예산감시운동'에서 '납세자운동'으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1) 투명예산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시민참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재정 정보의 공개이다. 정보공개 제도가 1998년부터 도입되었지만, 정부의 예산편성과정과 집행과정은 투명하지 않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예산안을 국회나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일체의 정보를 시민단체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예산안을 국회나 지방의회에 제출한 이후에도 예산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낭비적 요인이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예산의 집행과정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10건 이상의 정보공개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판공비 이외에도 예산집행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처럼 정보에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감시운동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정보가 폭넓게 공개되어야 한다. 행정관청이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결정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정보공개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서, 결산서와 같은 기초자료들과 그 근거가 되는 설명자료들은 의회에 제출됨과 동시에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라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 10월 25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다르게 '적극적인 정보의 공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